
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1년 제12차 직원 채용 공고(재공고)
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”, “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”에 근거하여 201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설치하였고 현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“생명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인천”을 함께 만들어 갈 열정적이고 책임감을 가진 인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적극적이고 성실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1. 11. 22.
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장

1 모집 분야 및 인원

가. 고용 형태: 계약직

※. 계약종료 후 기관 사정 및 직원평가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

나. 채용 인원: 1명

다. 채용 직위: 팀원(자살예방사업팀)

라. 근로 기간: '21. 12. 13 ~ '22. 12. 31

마. 근로 시간: 주 40시간(월~금 09:00~18:00)

바. 주요 업무: 자살예방사업팀(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등)

2 응시 자격 요건

가. 응시 자격:

○ 자격사항

- 정신건강전문요원

-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임상(상담)심리사 또는 관련 직종 유경험자 지원 가능

* 2021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경력 인정

나. 응시연령: 제한 없음

다. 성별: 제한 없음

라. 우대사항: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 경력자, 운전면허증 소지·운전가능한 자

마. 채용결격사항: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한다.

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8조(채용 결격사항)

-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
-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- ③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정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나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⑦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⑧ 센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3 근무 조건

가. 고용 형태: 계약직

나. 근무 기간: '21. 12. 15. ~ '22. 12. 31(입사일은 조정 가능합니다.)

다. 급여 수준: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

4 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

가. 전형 일정

- 1차 서류전형: '21. 11. 22. (일) ~ '21. 12. 5. (일) 23시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'21. 12. 6. (월)
- 2차 면접시험: '21. 12. 8. (수) 14:00 (일정 변동 가능)
- *.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- 최종 합격자 발표: '21. 12. 9. (목)
- 신규채용: '21. 12. 13. (일)_입사일 조정 가능

*.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나. 전형 방법 및 서류 접수 안내

- 지원서 접수 기간: '21. 11. 22. (일) ~ '21. 12. 5. (일) 18시 까지
- 지원서 접수 방법: 이메일 handsome82@ispc.or.kr (제목에 [입사지원] 명시)
- 문의: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(032-468-9917)

다. 지원 구비 서류

-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(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)
-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 - 채용 시 원본 제출
-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_채용 시 사본 제출
- ④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_채용 시 사본 제출
- ⑤ 채용신체검사서_채용 시 제출

5

기타사항

- 가.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자 발표 및 채용 후라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.
- 나.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, 신원조사 결과 등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- 다. (가),(나)경우 및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라.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마. 과거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“보건복지부-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”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입되지 않은 근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음.
- 바.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.